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8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이수진·박상혁·임오경

한병도・강준현・최기상

정정순 · 오영환 · 양정숙

기동민 · 홍정민 · 황운하

홍성국 · 이성만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의 창업 지원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기업인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기업가정신 지수, 여성기업 지수와 같은 여성기업 활동의 전반적 지표는 국제적으 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 여성기업가정신 교육,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명시하여 여성 경제인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위한"을 "위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여성기업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
- 2. 여성기업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	
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	
상시키기 <u>위한</u> 연수 및 지도사	<u>위한 다음 각 호의</u>
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1. 여성기업인의 기업가정신 교
	육과 관련된 사항
<u><신 설></u>	2. 여성기업인 간의 협력 및 조
	직화에 관한 사항
<u><신 설></u>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u><신 설></u>	4.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
	기업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